

# 노동관련 각종 요율표 - 2019년도 -

## ○ 건강보험료율

년 도	보 험 료 율	사업주(50%)	근로자(50%)
2017	보수월액 × 6.12%	3.06	3.06
2018	보수월액 × 6.24%	3.12	3.12
<b>2019</b>	<b>보수월액 × 6.46%</b>	<b>3.23</b>	<b>3.23</b>

- 2019년도 가입자부담 3.23%, 사용자부담 3.23%씩 각각 부담
- 노인장기요양보험 : 건강보험료의 8.51%(사용자 8.51%,근로자 8.51%씩 각각 부담)

## ○ 국민연금료율

년 도	요 율	사업주(50%)	근로자(50%)
2017	표준소득월액의 9%	4.5	4.5
2018	표준소득월액의 9%	4.5	4.5
<b>2019</b>	<b>표준소득월액의 9%</b>	<b>4.5</b>	<b>4.5</b>

- 2019년도 가입자부담 4.5%, 사용자부담 4.5%씩 각각 부담

## ○ 고용보험료율 산정기준

사 업 별	보 험 료 율	산 정 기 준
실업급여 (공동 부담)	13/1,000(1.3%)	사용자부담 6.5/1,000(0.65%) 근로자부담 6.5/1,000(0.65%)
고용안정사업 · 직업능력 개발사업 (사용자 부담)	2.5/1,000 (0.25%)	상시근로자 150인 미만
	4.5/1,000 (0.45%)	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
	6.5/1,000 (0.65%)	상시근로자 1,000인 미만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업체
	8.5/1,000 (0.85%)	상시근로자 1,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,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

- 실업급여요율, 고용안정·직업능력 전년대 동일

## ○ 산재보험료율(천분율)

년 도	2015	2016	2017	2018	2019
사업종류					
일반건설공사(갑)	38	38	39	40.5	37.5 <small>(출퇴근제해 1.5 포함)</small>
일반건설공사(을)					
중건설공사					
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					

-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 14조 제3항 및 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을 고시함.

## ○ 노무비율(백분율)

년 도	2015	2016	2017	2018	2019
사업종류					
일반건설공사(갑)	27 (31)	27 (31)	27 (30)	27 (30)	27 (30)
일반건설공사(을)					
중건설공사					
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					

- ( )안은 하도급 노무비율
-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고시함.

## ○ 건설업 월평균임금

년 도	건설업 월평균임금
2015	3,157,765원
2016	3,408,840원
2017	3,588,357원
2018	3,619,987원
<b>2019</b>	<b>3,906,885원</b>

-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해 고시함.

## ○ 최저임금

년 도	최저임금		
	시간급	일급(8h)	월급(209h)
2016	6,030	48,240	1,260,270
2017	6,470	51,760	1,352,230
2018	7,530	60,240	1,573,770
<b>2019</b>	<b>8,350</b>	<b>66,800</b>	<b>1,745,150</b>

- 최저임금은 2019.1.1 ~ 2019.12.31까지 적용
-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및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.[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%(상여금), 7%(복리후생비) 초과분]

## ○ 장애인 고용의무대상 사업주 범위 및 고용부담기초액

년 도	사업주 범위(이상)	고용부담기초액 (1인당/월)
2015	69억 0천 9백만원	710천원
2016	75억 7천 5백만원	757천원
2017	75억 7천 5백만원	812천원
2018	75억 7천 5백만원	945천원
<b>2019</b>	<b>86억 8천 1백만원</b>	<b>1,048천원</b>

- 2019년 장애인 의무고용률: 국가기관·공공기관(3.4%), 민간기업(3.1%)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을 고시함.

## ○ 임금채권보장기금, 석면피해분담금사업주부담금 비율

년 도	임채부담금비율	석면부담금비율	비 고
2015	0.8/1,000	0.04/1,000	
2016	0.6/1,000	0.04/1,000	
2017	0.6/1,000	0.03/1,000	
2018	0.6/1,000	0.03/1,000	
<b>2019</b>	<b>0.6/1,000</b>	<b>0.03/1,000</b>	

-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고시함.(고용·산재보험료 보수총액 기준)